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46

발의연월일: 2022. 8. 2.

발 의 자:조명희·성일종·이종배

김상훈・홍문표・김용판

태영호 · 정우택 · 이명수

유경준 • 이주환 • 박성민

서일준 • 배준영 • 박대수

최춘식 • 박 진 • 황보승희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, 미래형자동차·차세대소프트웨어 등 신성장·원천기술과 반도체·이차전지·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.

한편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,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.

이에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

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려는 것임(제24조제1항제2호가목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1) 중 "100분의 3"을 "100분의 10"으로, "100분의 5"를 "100분의 15"로, "100분의 12"를 "100분의 30"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"100분의 6"을 "100분의 25"로, "100분의 8"을 "100분의 30"으로, "100분의 16"을 "100분의 3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 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---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-----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공제금액 2. -----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 분의 3,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

다.

1) 신성장·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3(중견기업은 100분의 5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

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"이라 한다)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: 100분의 6(중견기업은 100분의 8, 중소기업은 100분의 16)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1)
<u>100분의 10</u>
<u>100분의 15</u>
<u>100분의 30</u>
2)
<u>100분의 25</u>
<u>100분의 30</u>
<u>100</u> 분의 <u>35</u>
나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